

사업 코드	사업명	월 서비스 가격 (천원)			비우체 생성정보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 연령, 가구특성 모두 충족해야 함)			서비스 내용 및 방법 * 동일 사업코드 내 1일 서비스 총량은 2회 이하만 허용				구비서류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행복e음 업로드) * 우선순위 관련 서류는 별도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지원 기간	생성 주기	소득 (기준중위소득)	출생연도 (만나이)	가구특성 및 우선순위	서비스 내용	제공장소	제공주기	제공시간 (회당)	
290503	아동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180	1 160 2 140 3 120	1 20 2 40 3 60	12개월 1개월 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4~13) 2006~2015 (포함) 출생자	1.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문제의 어려움 예상(예방차원)에 대한 의사 소견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 기록, 공공기관 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아동이 소속되어 있는 교육기관(학교), 유치원·어린이집의 기관장 또는 교사가 추천하는 아동 2. KPRC, K-CYP, CBCL 검사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일반기관에서 실시한 평가결과지 포함] 절단점 이상인 경우 * 추천지는 학교(기관)에 속한 아동에 한해 추천 가능 * 추천사에는 아동의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구체적 기술 포함 * 절단점 기준 부산시 지침 별도제시 □ 등급기준 1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 2등급: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3 3등급: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 중복이용불가: 발달재활서비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011003)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 우선순위 1 다자녀(3인 이상) 2 유치원 및 어린이집 미이용자 3 한부모 4 연령(고연령 순: 만13세, 만12세~만4세) 5 맞벌이 6 다문화 * 2번 우선순위의 경우 영유아차량, 놀이학교 등의 사실 유아·시설 이용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자로 간주	● 학교부적응 등 정서행동적 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아동 대상 클래식 악기 및 미술교육 등을 매개로한 예술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1. 음악 및 미술 실기 - 악기리본 및 실기(바이올린, 플루트, 클라리넷, 비올라, 첼로 등 선택), 악기대여 - 미술지도: 기본 스케치 기술, 클레파스 & 물감 등 채색화 그리기, 조각 및 만들기 등 2. 정서순화프로그램: 미술치료, 음악놀이 치유,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3. 안전교육: 서비스 제공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관련한 예방교육(화재, 지진, 응급·재난상황 등)	기관 방문형 (원칙) + 재가 방문형 (일부 허용) (4인 이하 소그룹) * 안전교육 서비스 제공현장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관련한 예방교육(화재, 지진, 응급·재난상황 등) 또는 이용자 특성(노인·질환 등)에 따른 안전교육(낙상예방 등) 실시	1. 월4회 (주1회) 2. 월4회 (주1회) 3. 연1회	1-3, 60분	1. 의사소견서, 의료기록, 추천서, [공공기관 소견서 + 자격증사본] 2. 검사결과지	
250203	뇌에 기(氣)가 짝박	160	1 152 2 140 3 132	1 8 [수급자:4] 2 20 [수급자:10] 3 28 [수급자:14]	12개월 1개월 마다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65) 1954(포함) 이전 출생자	□ 등급기준 1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 2등급: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3 3등급: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 중복이용불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 우선순위 1 1인가구 2 의료기관 추천 3 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추천 4 노부부(부부 중 1인이 만80세 이상인 경우) 5 임상심리사 추천 6 공공전달체계 추천 7 장애등록자 8 연령(고연령 순)	1. Alz 학습요법: 치매예방 및 중증악화 예방을 위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두뇌 활성화 인지건강 프로그램으로 학습요법 교재에 의한 1:1 맞춤형 읽기, 쓰기, 숫자계산으로 두뇌활성화 교육 2. 차문화 치료: 차를 통한 정서기회 안정 및 상담 3. 택탈케어, 색종이접기, 회상요법, 치매예방체조, 레크레이션 중 택2 4. 안전교육: 서비스 제공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관련한 예방교육(화재, 지진, 응급·재난상황 등) 또는 이용자 특성(노인·질환 등)에 따른 안전교육(낙상예방 등) 실시	재가 방문형 (원칙) + 기관 방문형(하음) [1인원씩, 이용자의 사정·요청에 따라 3인 이하 소그룹 가능]	1-3, 월8회 (주2회) 4. 연1회	1-3, 1인(60분) / 3인 이하 그룹(90분) 4. 60분	가구특성 적합 입증자료 신분증 진료확인서, 처방전, 의사진단서, 소견서	
080603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160	144	16 [수급자:8]	12개월 1개월 마다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60) 1959(포함) 이전 출생자 [의료급여 연계자 (55) 1964(포함) 이전 출생자]	1. 만60세 이상인 자와 국가유공자(연령무관)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음은 입증하는 (한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등(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제출자 2.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포함) 제출, 연령무관) 3. 파킨슨씨병 환자(연령무관, 파킨슨씨병 관련한 증빙서류·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4. 의료급여 추천자 □ 우선순위 1 1인가구 2 의료급여 연계자 3 국가유공자 4 M코드 5 G, 코드 6 R81, E10~15 장애인(파킨슨씨병 환자 포함) 7 신규 8 연령순(80세~70세 범위내 고연령 순)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 요법,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서비스 제공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체형교정 등 개인맞춤형 안마서비스 * 수기안마 외 기타 기구 사용될 경우 시간은 회당 15분 내로 제한 * 안마원, 안마시술소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 해당	기관 방문형 (1인)	월4회 (주1회)	60분	1. (한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등 2. 장애인 등록증 3.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050903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 (내아가 여때서)	1 70 2 100	1 60 2 90	1 10 [수급자:5] 2 10 [수급자:5]	12개월 1개월 마다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65) 1954(포함) 이전 출생자 [의료급여 연계자 (55) 1964(포함) 이전 출생자]	1. 보건소 노인체력측정 3개부문(근지구력, 유연성, 평형성) 검사결과 평균 4등급 이상인 자 또는 표준범위 외의 자 2. 신체건강 등에 의학적 이상조건이 있는 재의사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3. 체성분검사(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일반기관 모두 포함) 또는 기초체력검사 결과 표준범위 외의 자 4. 의료급여 추천자 □ 등급기준 1 1등급: 마루운동서비스 2 2등급: 수중운동서비스 □ 우선순위 1 1인가구 2 의료급여 연계자 3 신체질환자(의사 및 병원 진단·소견·진료확인) 4 연령(80세~70세 중 고연령 순) 5 연령(70세~65세 중 고연령 순)	1. 마루운동서비스 1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유연성 및 근력 운동, 협동형 운동, 평형성 향상 운동 2 건강상태 상담 및 건강교육 - 체성분 검사와 기초체력 측정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에 대한 상담 - 어르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 관련한 교육 실시 3 발표회 또는 경연: 실로빅 등 제공 서비스에 대한 발표회 또는 경연 실시 4 안전교육: 서비스 제공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관련한 예방교육(화재, 지진, 응급·재난상황 등) 2. 수중운동서비스 1 수중운동 및 건강지원프로그램: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 수중운동을 통해 근력강화, 관절가동성 및 심폐기능 향상 지원 2 건강 및 영양교육: 체성분 검사와 기초체력 측정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건강 상담(실문활용)을 실시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식생활 및 생활패턴 개선지도 3 안전교육: 서비스 제공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관련한 예방교육(수중 안전사고, 화재, 지진, 응급·재난상황 등)	기관 방문형 (1~25인)	1. 마루운동 1 월8회 (주2회) 2 분기1회 3 연1회 4 분기1회 2. 수중운동 1 월8회 (주2회) 2 분기1회 3 분기1회	1. 1~3 90분 2. 1~2 90분	1. 보건소 노인체력 측정검사 결과지 2. 의사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3. 체성분검사결과지, 기초체력검사결과지	
070101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720	1 648 2 576 3 504	1 72 2 144 3 216	12개월 6개월 마다	소득기준 없음	(24) 1995(포함) 이후 출생자	1.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장애인복지법」 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으로 인정 ** 정신적 장애: 1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2 정신장애(정신장애인) □ 등급기준 1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 2등급: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3 3등급: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 □ 우선순위 1 장애등급 순(1급, 2급, 3급 등) 2 소득수준(저소득 순)	1. 보조기 대어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 대어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지원 서비스(단, 건강보험공단 지원 대상 품목 제외) 2. 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반기별 최소 1회(예: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 수시점검: 정기점검외 점검·유지보수(예: AS, 소모품 교환, 수리, 교정 등) 3. 상담 및 정보제공 - 초기상담: 대상 아동의 장애 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 측정 등 - 수시상담: 보조기 이용 상담, 불만 처리, AS 상담 등 연중렌탈 및 점검(정기점검: 연2회, 수시점검: 제한없음)	재가 방문형 (1인)	연중렌탈 및 정기점검 (연 2회) 수시점검 제한없음	제한 없음	장애인등록증 또는 의사소견서 (예산범위 내에서 5회 재판정) 신분증	
170203	자녀의 성공을 돕는 부모 코칭 (키울 Mom 난다!)	1. 140 ~ 220 2. 140 ~ 300	1. 126 2 120 3 100	1. 14~40 2 20~80 3 40~120	12개월 1개월 마다	소득기준 없음	제한 없음	1. 미취학 및 초·중·고 자녀를 둔 부모 2. 예비부모(주민등록상 가족관계 확인가능자, 혼인신고자) 3. 조부모(조손세대): 주민등록상 가족관계 확인가능자로 법적 조손가정과 주민등록상 조부모와 손자녀만 이 거주하고 있는 가정(주민등록상 손자녀의 부모가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이용가능) □ 등급기준 1. 집단상담 (1:2~1:15) 1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 2등급: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3 3등급: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2. 개인상담 (1:1) 1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 2등급: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3 3등급: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우선순위 1 한부모 2 조손세대(가정위탁부모 포함) 3 맞벌이 4 미취학자녀 고연령 순 5 취학자녀 저연령 순 6 예비부모 7 다자녀	1. 발달단계에 따른 자녀 이해하기 - 자녀행동 이해하기 - 자아존중감, 나와 타인 이해하기 등 배려와 존중이 있는 아이로 키우기 2. 양육스트레스 이해 및 지원: 효율적 감정처리 방법, 긍정적 부모역할 교육 3. 화목한 가족관계 리더되기 4. 안전교육: 서비스 제공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관련한 예방교육(화재, 지진, 응급·재난상황 등)	기관 방문형	1. 1~3 월4회 (주1회) 4 연1회 2. 1~3 월4회 (주1회) 4 연1회	1. 1~3 120분 4 60분 2. 1~3 50분 4 50분	가구특성 적합 입증자료 신분증	

2019년 부산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안내

지금 내게 필요한 사회서비스가 여기!



★ 부산시 모든 구·군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사업 코드	사업명	월 서비스 가격 (천원)			바우처 생성정보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 연령, 가구특성 모두 충족해야 함)		서비스 내용 및 방법 ※ 동일 사업코드 내 1일 서비스 총량은 2회 이하만 허용			구비서류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행복e음 업로드) ※ 우선순위에 관련 서류는 별도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지원 기간	생성 주기	소득 (기준중위소득)	출생연도 (만나이)	가구특성 및 우선순위	서비스 내용	제공장소		제공주기	제공시간 (회당)
120103	동화야 놀~자 (스토리텔링)	1.64 2.90	1. 54 2. 44 3. 32	1. 10 2. 20 3. 32	12개월	1개월 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 (3~7) 2012~2016 (포함) 출생 아동 2. (2~3) 2016~2017 (포함) 출생 아동 및 부모	□ 등급기준 1. 유아단독형 ①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② 2등급: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③ 3등급: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2. 패키지형(유아+부모) ① 4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② 5등급: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③ 6등급: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 중복이용불가: 시청각장애인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 우선순위 ① 다자녀(3인이상) ② 유치원 및 어린이집 미이용자 ③ 한부모 ④ 맞벌이 ⑤ 연령(유아 단독형-고연령 순: 만7세, 만6세~만3세, 패키지형-고연령 순: 만3세, 만2세) ⑥ 다문화 ※ ②번 우선순위의 경우 영아유치원, 놀이학교 등의 사실 유아·시절 이용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자도 간주	1. 유아단독형 ① 동화구연: 연령에 맞는 동화를 선택하여 구연, 행연(신체표현을 겸한 구연), 악연(음악 및 음율을 가미한 구연) 서비스 제공 ② 동화구연 연극: 인형, 그림, 막대, 완구, 손유희, 그림자 동화 등 연극 관람 및 참여, 역할극, 발표회 ③ 안전교육: 서비스 제공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관련한 예방교육(화재, 지진, 응급·재난상황 등) 2. 패키지형(유아+부모) ① 동화구연: 아동과 부모가 함께 하는 동화 구연, 행연, 악연 서비스 제공(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대상으로 동화구연 등을 시연할 수 있도록 지도) ② 동화구연 연극: 인형, 그림, 막대, 완구, 손유희, 그림자 동화 등 연극 관람 및 참여, 역할극, 발표회 ③ 안전교육: 서비스 제공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관련한 예방교육(화재, 지진, 응급·재난상황 등)	기관 방문형	1-2, ① 월4회 (주1회)	1-2, ①~⑥ 50분	신분증
130103	해양역사 문화체험 아카데미	150	① 135 ② 120 ③ 110	① 15 ② 30 ③ 40	12개월	1개월 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7~15) 2004~2012 (포함) 출생자 or 초등 재학생~중학 재학생	□ 등급기준 ①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② 2등급: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③ 3등급: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 우선순위 ① 다자녀(3인이상) ② 한부모 ③ 조손세대 ④ 연령(고연령 순: 만15세, 만14세...만7세) ⑤ 맞벌이 ⑥ 다문화	1. 부산의 역사, 문화, 해양관련 기본과정: 부산의 역사, 문화, 해양이라는 3가지 주제로 사회적, 창의력, 리더십 증진을 위한 비전형성(지역의 항도적 주제로 서비스 운영, 지역의 특성반영) 2. 부산의 역사, 문화, 해양 체험: 부산 지역의 역사, 문화, 해양 관련한 유적지, 박물관, 기념관 체험 및 부산의 인물, 스포츠, 문화 체험 제공 3. 안전교육: 서비스 제공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관련한 예방교육(화재, 지진, 응급·재난상황 등)	기관 방문형 (1~12인)	1. 월3회 (주1회) 2-3. 월1회	1. 120분 2-3. 360분	신분증
160203	아동건강 관리서비스	85	① 75 ② 65 ③ 57	① 10 ② 20 ③ 28	12개월	1개월 마다	소득기준 없음	(5~12) 2007~2014 (포함) 출생자	□ 가구특성 1. 과체중아동(비만도 120% 이상) 또는 저체중아동(비만도 85% 이하) 2. 연령 대비 표준 몸무게 및 표준 키 미달자로 발달 지연에 대한 의사소견이 있는 자 ※ 중복이용불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 □ 등급기준 ①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② 2등급: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③ 3등급: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우선순위 ① 의사소견서(발달지연) ② 비만율 높은 순 ③ 저체중 심각수준 순	1. 맞춤형 운동처방·지도: 구기종목 등 유산소운동 2. 식생활 습관 교정지도 - 영양 및 식생활 습관 개선 교육 - 월별 변화정도, 권장식단, 부모협조 등의 자료(문서, 가정통신문 등) 제공 3. 안전교육: 서비스 제공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관련한 예방교육(화재, 지진, 응급·재난상황 등)	기관 방문형 (15인이하)	1. 월7회 (주2회) 2. 월1회 3. 연1회	1-3, 90분	1. 의료기관, 보건소, 학교보건교사의 비만도 확인자료 (키, 몸무게 확인) 2. 의사소견서
011003	아동청소년 심리치유 서비스 (우리아이기가 달라졌어요!)	180 270	① 162 ② 144 ③ 126 ④ 108	① 36-96 ② 54-126 ③ 72-162	12개월	1개월 마다	소득기준 없음	(18) 2001(포함) 이후 출생자	1. 발달지연 ① 발달 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 소견서·진단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록 등이 있는 경우 ② 교육기관 교사(학교), 유아교육기관장, 어린이집 원장, 학교복지사, 학교 상담교사(특수교사, 특수반 교사 포함), 워센터 및 위클래스,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추천하는 아동 중 발달검사(K-CDR-R, K-ASQ, K-DST, DEP, CBCL, KPRC(K-CYP로 대체) 또는 효과정 검사도구(부산지침 참조, 예: 언어발달척도, 인지기능검사 등) 결과(일반기관에서 실시한 검사결과지 포함)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에 해당하는 경우(추천사+검사결과지(작성기관 명시, 단순 검사지 제출이 아닌, 검사 결과에 따라 간단한 서비스 필요 사유 별도작성) 동시제출) 2. 문제행동 ③ 문제행동(ADHD)관련 의사 소견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록, 공공기관(워센터, 아동보호종합센터) 임상심리사 소견서와 검사결과지(부산시 지침의 심리치유서비스 효과정 검사도구를 토대로 검사한 결과지 또는 해석지, 분석지) ④ 일반기관·병원 임상심리사, 일반기관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와 검사 결과지(부산시 지침의 심리치유 서비스 효과정 검사도구를 토대로 검사한 결과지) ⑤ 교육기관 교사(학교), 유아교육기관장, 어린이집 원장, 학교복지사, 학교 상담교사(특수교사, 특수반 교사 포함), 워센터 및 위클래스,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추천하는 아동 중 부산시 지침 효과정 검사도구(예: CBCL, KPRC, K-CYP 등)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일반기관에서 실시한 평가결과지 포함) 절단점 이상인 경우(추천사+검사결과지+검사결과지의 아동이름, 검사기관 명 반드시 포함)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추천서: 아동의 학교 및 어린이집 등 부작용 및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구체적 기술 포함 - 검사결과지: 검사도구를 토대로 검사하여 분석한 결과지(아동이름, 작성기관명 명시) • 절단점 기준 부담금 지침 별도제시 □ 등급기준 ①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② 2등급: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③ 3등급: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④ 4등급: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 ※ 중복이용불가: 발달재활서비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290503)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우선순위 ① 학교복지사, 상담교사(특수교사, 특수반교사 포함), 위클래스 교사 추천 ② 아동시설 입소자, 대안학교 재학생 ③ 드림스타트센터, 워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종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관리아동) ④ 의사소견서(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아동청소년 관련 전문의 소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록(문제행동 및 정서 문제, 발달지연), 공공기관 임상심리사 추천 ⑤ 담임교사, 유아교육기관장, 일반기관·병원 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 어린이집 원장 추천 ⑥ 다자녀(3인이상) ⑦ 한부모 ⑧ 맞벌이 ⑨ 저연령 순	1. 발달지연 - 발달기초: 기본적 대근육, 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 언어발달: 의사소통 가능·기술 및 어휘발달 촉진 - 초기인지: 감각운동에 기초한 인지발달 촉진 - 정서, 사회적: 기본적인 정서표현, 가족 및 타인과의 사회적 활동 촉진 2. 문제행동 - 심리상담: 문제행동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회당 10분 내외) - 개인 맞춤형 • 놀이프로그램: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적, 정서발달 등 지원 • 언어프로그램: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 환경적 원인을 분석, 증상별 치료 계획을 수립, 적절한 치료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시켜 의사소통 능력 향상 • 인지프로그램: 아동의 발달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감각발달 향상 • 미술프로그램: 다양한 미술매체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 음악프로그램: 다양한 악기 또는 음악을 통한 표현력 향상, 정서발달 향상 3. 안전교육: 서비스 제공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관련한 예방교육(화재, 지진, 응급·재난상황 등) ※ 피아노 등 단순 음악악기를 활용할 가능 프로그램 제공 불가	가구특성 적합 입증자료 (예산범위 내에서 1회 재판정) 신분증 1-① 의사소견서 등 1-② 추천서+검사결과지 2-③ 의사소견서+검사결과지 또는 공공기관 추천서+검사결과지 +임상심리사 자격증 사본 2-④ 소견서+검사결과지 +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사본 2-⑤ 추천서+검사결과지			

■ 아동·청소년 ■ 노인·장애인 ■ 가족지원

★ 사회서비스 이용절차 및 이용자 준수사항

사회서비스 이용절차	이용자 준수사항 등
1. 서비스 신청 가. 신청 및 접수: 읍·면·동 -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서비스별 확인 필요 ※ 건강보험증: 행복e음으로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신청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위임장 지참) 나. 신청기간: 2019.1.29.(화) ~ 2.8.(금) ※ 접수시간 외에 접수불가, 단 대기자 없을 시 구군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접수 가능	- 대기자 및 재정상황에 따라 구·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 유사서비스 중복이용 불가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내용 숙지
2. 이용자 선정 다.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시·군·구에서 주소지로 배송	- 본인부담금(모든 서비스에 직접 반드시 있음) 및 제공기관 정보 확인
3. 서비스 계약 라. 제공기관 선택 후 방문 ① 통지서 및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로 기관 확인 (www.socialservice.or.kr) ② 부산지역사회서비스 홈페이지(www.ssbn.or.kr)를 통해 기관 정보 검색 및 확인 ※ 등록된 제공기관에서만 서비스 가능	- 제공기관 관계자 초기상담 - 서비스 제공 계획서(내용, 횟수 등) 확인 - 서비스 제공 계약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4.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수령 마. 바우처 카드 수령 - 국민행복카드 신청 후 수령 - 희망e카드 기 소지자는 기존카드 이용 가능	-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카드 보관 ※ 타인 소지 및 대여, 제공기관이 보관 할 수 없음
5. 본인부담금 사전납부 바.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모든 서비스)	- 서비스 제공 받기 전 본인부담금 납부 (계좌이체 원칙, 현금 납부 시 영수증 수령)
6. 서비스 이용 사. 서비스 제공 계약 기준으로 이용: 기준정보(내용, 횟수, 금액 등) 확인	- 사전검사 실시 - 서비스 제공기록지 서명(매회) - 국민행복카드(바우처) 결제(매회)
7. 서비스 종료 아. 서비스 지원기간 만료 시 자동종료: 실비로 추가구매 가능	- 사후검사 실시 및 이용자 상담

★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2개월 연속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미결제 포함)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타 구·군으로 이사를 할 경우, 이용 중인 모든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공기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월단위로 변경하고, 최소 7일전 기존 제공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권을 타인에게 판매·대여하거나,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안됩니다.
-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품 등 어떠한 금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안됩니다.
- 구군 및 신규사업은 해당 구군에 별도로 문의바랍니다.
- 1인당 연간 1개 서비스만 이용가능.

- ▶ 서비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 부산지역사회서비스는 www.ssbn.or.kr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 서비스 신청관련 주의사항

- 연령적용: 신청 시점 출생연도 기준 적용
- 중복이용불가: 서비스 지원기간 내 동시 이용불가
- 우선순위 일반원칙: 각 서비스별 상이(서비스별 우선순위 참조)

▶ 서비스 제공 주의사항

- 월단위 서비스 총량은 「월 정부지원금」 범위 내에서만 서비스 제공
- 기준정보의 횟수와 시간은 반드시 준수해야하며, 기준정보의 내용을 초과하여 서비스 제공시 이용자에게 반드시 별도의 비용 지불받아야 함

★ 2019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가구 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1인	2,048,000	66,173	25,519	66,876
2인	3,488,000	113,335	104,203	114,691
3인	4,512,000	146,494	147,114	148,626
4인	5,536,000	180,259	187,654	183,286
5인	6,560,000	213,859	229,322	217,845
6인	7,585,000	248,424	271,339	255,816
7인	8,609,000	283,533	308,578	295,580
8인	9,633,000	326,151	355,813	348,036
9인	10,657,000	348,036	380,294	378,988
10인	11,681,000	378,988	413,866	410,509

▶ 기준중위소득 140% 건강보험료

가구 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1인	2,390,000	77,343	42,355	77,550
2인	4,069,000	131,905	129,221	133,633
3인	5,264,000	171,897	177,370	174,636
4인	6,459,000	209,942	224,509	213,859
5인	7,654,000	248,424	271,339	255,816
6인	8,849,000	295,580	321,364	310,158
7인	10,044,000	326,151	355,813	348,036
8인	11,239,000	378,988	413,866	410,509
9인	12,433,000	410,509	449,143	442,043
10인	13,628,000	442,043	483,381	487,738

▶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가구 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1인	2,561,000	82,923	54,701	83,802
2인	4,360,000	142,729	142,335	144,749
3인	5,640,000	183,286	191,312	186,282
4인	6,920,000	226,441	245,305	231,041
5인	8,201,000	272,807	297,628	283,533
6인	9,481,000	310,158	336,809	326,151
7인	10,761,000	348,036	380,294	378,988
8인	12,041,000	410,509	449,143	442,043
9인	13,322,000	442,043	483,381	487,738
10인	14,602,000	487,738	531,741	563,593